# 4.1.14 방화관리규정

제정 2000. 04. 21. 개정 2006. 10. 19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"본 대학"라 한다)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로부터 재해를 방지하여 인명 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전 교직원과 학생 및 교내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- 제3조(조직) ① 총장은 본 대학의 방화관리에 관한 총책임자가 되며, 본부에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관리자를 두며, 각 처와 부속, 부설기관 및 건물별로 방화 정·부 책임자를 둔다.
  - ② 각 부서의 방화책임자는 당해 부서의 장으로 하며, 부책임자는 부서의 선임과장 또는 선임계장으로 하고 각 실별로 화기책임자를 둔다.
  - ③ 각 강의동별 방화책임자는 당해 선임학부(과)장이 되며, 부책임자는 차선임, 선임학부(과)장이 된다.
- 제4조(자위소방대 편성) ① 화재 및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본 대학 교직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, 운영한다.
- ② 자위소방대는 본부분대, 기동분대, 화생방분대, 소화급수분대, 방호복구분대, 의료구호분대를 둔다.
- 제5조(임무)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분담한다.
  - ① 본부 방화관리자
    - 가.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소방계획서 작성
    - 나. 소방훈련 및 교육
    - 다.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점검, 정비 및 유지관리
    - 라. 화기취급 및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
  - ② 건물별 방화책임자 및 부책임자
    - 가. 사용 건물내의 화재예방 및 화기 단속확인
    - 나. 각실 소화기 책임자를 임명하고, 소방장비 등 안전유지관리 확인
    - 다. 부책임자는 방화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소화기 책임자
    - 가. 담당구역(실포함)내에 시설비치된 각종 소화기 및 소방장비 등의 안전유지관리
    - 나. 각실 위험물 사용 및 화기취급에 철저를 기한다.

- 다. 방화관리자의 업무협조
- ④ 경비원
  - 가. 야간 순찰의 경비구역내의 화재 또는 화재 위험요소를 발견시는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대처 한다.
- 제6조(자체검사 및 점검) ① 방화관리자는 본교의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위험물 보안검사를 실시하며, 위험물 취급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다.
  - ② 위험물 취급장소 및 화기취급 장소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 제15조(소방점검)에 의거 연1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소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.
  - ④ 검사, 점검에 관한 기록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교육 및 훈련

- 제7조(교육 및 훈련)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정기교육은 연2회(합동훈련1회, 자체훈련1회)로하고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다.
  - ③ 화재 예방 상 교육 및 훈련에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.

## 제4장 비상연락체계

- 제8조(비상연락 및 소집)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화재는 최초발견자가 육성 또는 확성기를 총동원하여 전 교직원에게 알리며, 휴일 및 야간의 화재 발생시는 본부 당직자에게 통보하며 즉시 자위소방대장에게 보고, 지시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자위소방대원과 교직원에게 소집, 통고한다.
- 제9조(화재신고) 화재발생을 목격한 최초 발견자는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와 자위 소방대장에게 화재발생시간, 화재 신고시간, 화재상황 등을 보고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